

의안번호	2211172
의 퇴 인	정동영의원
회 답 일	2025. 9. 3.
추 계 번호	25B3538

우주기본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제3항)	
2	안 제4조(우주활동의 국가책임)	국가는 민간의 우주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6조(국가 우주항공전략의 수립 등)	국가는 20년 단위로 국가우주항공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5년마다 국가기본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제4항)	
4	안 제7조(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는 국가기본전략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이하 "분야별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1. 우주개발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2. 위성정보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3.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계획 4. 우주항공 관련 산업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5. 그 밖에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기본계획	의무규정
		분야별 기본계획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제3항)	

5	안 제8조(국가 우주위원회)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함(제4항)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됨(제6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제7항)	
6	안 제9조(우주 개발총괄기구의 설립 등)	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기구(이하 “우주개발총괄기구”라 한다)를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우주개발총괄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2항) 1. 우주개발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 2.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3. 우주항공분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4. 우주항공분야 산학연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주항공분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우주개발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 7.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안 제10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운영재원)	우주개발총괄기구는 국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개발총괄기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는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재량·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우주개발총괄기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개발총괄기구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8	안 제11조(우주개발 선도사업)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술과 핵심기술의 확보 및 연구개발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우주항공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주개발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속한 인·허가 등 2.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3. 선도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그 밖에 선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우주항공청장은 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총괄기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비 또는 시제품 생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함(제3항)	재량·의무규정
		우주항공청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9	안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국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국제질서 준수, 공동연구개발, 우주안보 및 우주자원 개발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13조(산학연협력의 촉진)	국가는 우주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14조(우주 활동 육성 등)	국가는 우주공간 및 천체에서의 주거, 공장 등 우주산업 활동, 우주자원채굴, 우주폐기물 저감, 우주교통관리 등 우주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연구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주활동의 지속가능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제3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제4항)	
12	안 제15조(인공 우주물체의 등록 및 관리)	국가는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등록,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및 국제 등록, 안전한 발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제3항)	
13	안 제16조(우주자원의 관리)	국가는 우주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우주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제2항)	
		1.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기술 연구 2. 우주자원 관련 국제협력 증진 3.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 보장 및 이용 촉진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제3항)	
14	안 제18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2. 상세 사유

- #### □ 제정안은 우주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정안 중 다음 각 조항은 현행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안에 옮겨 규정하거나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7조·제8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

연번	조·항(조제목)	관련 조문
1	안 제7조(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관련 조문
2	안 제8조(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30명 이내로 동일하며, 「우주개발 진흥법」과 달리 제정안에 따른 위원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가되나,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회의 참석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연번	조·항(조제목)	관련 조문
3	안 제14조(우주활동 육성 등)	「우주개발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객용항공기·화물용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우주비행체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5.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 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정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에서 규정하는 우주활동 육성, 우주자원의 관리 등에 대한 기본원칙 및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우주활동 육성, 우주자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6조(우주자원의 관리)	

연번	조·항(조제목)	관련 조문
4	안 제15조(인공우주물체의 등록 및 관리)	「우주개발 진흥법」 제8조(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제9조(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안 제18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우주개발 진흥법」 제16조(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정안 중 다음 각 조항은 우주항공청 자체 인력 및 예산 범위에서 수행 가능하거나,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현행 예산사업이 실시 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안 제6조·제12조·제13조

연번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및 2025년 예산												
1	안 제6조(국가우주항공전략의 수립 등)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현재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 과학탐사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고, 2045년까지 추진할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자체 인력 및 예산으로 국가우주항공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 <tr> <td>민간달착륙선 탐재체 국제공동 연구사업</td><td>민간 달 착륙선 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 달 탐사 공동연구 추진</td><td>7,300</td></tr> <tr> <td>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td><td>대규모 천문·우주 전파 관측을 위한 인류 최대 규모의 국제 전파 간섭계 망원경 건설프로젝트 참여</td><td>2,000</td></tr> <tr> <td>우주국제 협력기반</td><td>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 체계적인 국제협력을 위하여 우 주분야 분담금, 국제프로그램 참 여,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우주 분야 네트워킹 강화 등 추진</td><td>1,720</td></tr> </table> 자료: 우주항공청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민간달착륙선 탐재체 국제공동 연구사업	민간 달 착륙선 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 달 탐사 공동연구 추진	7,300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대규모 천문·우주 전파 관측을 위한 인류 최대 규모의 국제 전파 간섭계 망원경 건설프로젝트 참여	2,000	우주국제 협력기반	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 체계적인 국제협력을 위하여 우 주분야 분담금, 국제프로그램 참 여,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우주 분야 네트워킹 강화 등 추진	1,72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민간달착륙선 탐재체 국제공동 연구사업	민간 달 착륙선 사업 참여를 통한 국제 달 탐사 공동연구 추진	7,300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대규모 천문·우주 전파 관측을 위한 인류 최대 규모의 국제 전파 간섭계 망원경 건설프로젝트 참여	2,000												
우주국제 협력기반	우리 역량과 실리에 맞는 전략적· 체계적인 국제협력을 위하여 우 주분야 분담금, 국제프로그램 참 여, 양다자 협력기반 지원, 우주 분야 네트워킹 강화 등 추진	1,720												

연번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및 2025년 예산		
3	안 제13조(산학연협력의 촉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위성활용 혁신기반조성	기업연구소 등 위성영상 주요 사용자가 위성영상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위성영상 서비스 시스템 개발 추진 등	1,900
		우주분야 전문인력양성	-대학 중심의 우주분야 특화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출연연 등 우주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체계개발 프로그램 참여 -우주 인력양성 관련 산학연 협의체 구성·운영 등	6,950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	산·학·연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모니터링 및 연구 성과물의 체계사업 연계지원	26,386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신속한 위 기상상황 감시 및 국가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군겸용(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및 확보	42,000
		Space-K BIG 프로젝트	우주 분야 기술 기반 마련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특화센터 기반 기초원천 기술 축적과 축적된 기술 기반 창업 등의 사업화를 통한 전주기 동시 지원	1,800
		자료: 우주항공청		

- 제정안 중 다음 각 조항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거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등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안 제4조(우주활동의 국가책임)
 - 우주개발 및 이용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 안 제9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설립 등) 및 안 제10조(우주개발총괄기구의 운영재원)
 - 제정안에 따라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총괄기구를 설립하고 국가가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우주개발총괄기구의 조직 및 사무공간의 규모, 우주개발총괄기구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안 제11조(우주개발 선도사업)
 - 제정안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우주개발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등을 하거나 선도사업을 통해 확보한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선정·실시될 우주개발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의 내용 및 규모, 국가의 지원 방식 및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